

식민지 후기 박문사(博文寺)의 건립, 활용과 해방 후 처리*

안 종 철

<목차>

- I. 서론
- II. 식민지 후기 박문사의 건립과 활용
 - 1. 장충단과 박문사의 건립배경과 장소
 - 2. 박문사 건립의 특징과 활용
- III. 해방 직후 박문사 관련 논란과 처리
 - 1. 해방 직후 종교계 귀속재산 처리의 원칙
 - 2. 논란의 대두와 과도입법의원에서의 해결
- IV. 결론

I. 서론

일제는 한반도에서 패망하면서 엄청난 양의 재산을 한반도에 남겨두고 퇴각했다. 이들 재산은 미군정 측에 귀속된다는 의미에서 귀속재산(vested

* 이 원고는 동국사학 제2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으로 토론자 이종수선생님께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property)이라고 했는데 당시 적산(敵産)이라고 통용되었다. 귀속재산의 대부분은 산업계의 공장이나 회사의 형태로 있었으므로 당연히 경제사학계의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었고 그러한 관점에서 일정한 연구 성과가 생산되었다.¹⁾ 그런데 귀속재산 가운데 일본인 종교계와 학교 재산도 상당수가 있었다. 특히 공립이 아닌 사유재산은 해방 후 정부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배분되어야 할 문제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산업체에 대한 연구에 비해 지극히 저조한데 이들 재산 중 일부가 미군정 하에서 불하된 것이 지적되는 정도이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문제 하에서 당시 재조선 일본불교계의 귀속재산의 향방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지하듯이 일제의 ‘한국병합’ 이전부터 일제의 각 종파들이 조선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제는 조선신궁을 중심으로 하는 신사체계에 이외에도 불교계를 활용해서 식민통치를 안정화시키려고 했으므로 조선에서 일본계 불교사찰은 증대되었다. 이들 재산은 해방이 될 무렵에는 상당수에 달하게 되었다. 현재 불교재산의 향방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사찰령과 불교관계 식민지 법이 1963년이 되어서야 폐지되었고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의 친기독교 정책에 따라 불교계의 적산분배는 불교계에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것 정도가 통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글에서 이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답을 제시한다는 것은 현재 연구 수준에 비추어볼 때 지극히 어렵다.

1) 대표적인 것으로 김기원, 『미군정기의 경제구조-귀속기업체의 처리와 노동자 자주관리운동을 중심으로』, 푸른산, 1990, 특히 19~48쪽; 박광작, 「미군정과 한국정부의 귀속재산 처리정책」, 『한국 제1·2공화국의 경제정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이해숙, 『미군정기 지배구조와 한국사회-해방이후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역사적 구조화』, 선인, 2008 중 제4장 「귀속재산의 처리」는 적산처리와 관련된 미군정의 제도와 당시 상황을 포괄적으로 논하고 있다. 적산과 미국의 대한정책을 다룬 것으로는 정성화, 「적산의 처리를 통해서 본 미국의 대한정책」, 『경희사학』 16·17, 경희사학회, 1991, 417~445쪽 참조.

다만 일제가 1932년 장충단(獎忠壇)공원 내에 설립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추모사찰인 박문사의 향방을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일정한 문제제기와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할 뿐이다. 일제는 경성부의 부지인 장충단공원에 박문사를 건립함으로써 조선 내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조선병합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확고히 하고자 했다. 이 사찰은 해방 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해방 후 이 사원과 부지는 단순히 일제의 사유재산으로 취급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이 부지는 불교계의 희망과 달리 미군정 당시에 관유지로 환원되었다. 박문사의 건립과 활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불교시설이었음을 확인하고 그것이 해방 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추적함으로써 당시 불교계 적산 처리의 단초를 얻으려고 한다.

II. 식민지 후기 박문사의 건립과 활용

1. 장충단과 박문사의 건립배경과 장소

박문사는 장충단공원의 한 부지(오늘날 신라호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원래 장충단은 1900년 무렵 고종이 육군제도와 원수부(元帥府)를 만든 이후에 원수부로 하여금 국가를 위해 죽은 이들을 제사지내는 것을 지시한 데서 비롯되었다.²⁾

난리에 뛰어들어 나라를 위한 일에서 죽은 자에 대하여 반드시 제사를 지내

2) 이상배, 「고종의 장충단 설립과 역사적 의미」, 『도시역사문화』 4, 서울시립박물관, 2006, 154쪽. 이 논문이 장충단 설립에 대한 유일한 연구이다.

어 보답하는 것은 귀신을 위로하여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군사들의 기세를 고무하기 위한 것이다. 갑오년 이후로 전사한 병졸들에 대하여 미처 제사를 지내주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이것은 결함으로 된다. 생각하건대 울적하고 원망에 싸인 혼백들이 의지하여 돌아갈 곳이 없어 통곡하는 소리가 저승에 울려져 있지 않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여기까지 말하고 보니 내 가슴이 아프다. 제사 지내는 절차에 대하여 원수부로 하여금 품처(稟處)토록 할 것이다.³⁾

즉 을미참변(1895)때 궁을 수비하다가 일본 폭도들에 의해 살해된 궁내부대신 이경식, 시위연대장 홍계훈 등을 추모하고 이후 국가의 저명인사들에 대한 공식 추모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대한제국시기에 설립되었다. 그러므로 장충단 공원 조영사업의 취지는 “1894년 동학군에게 희생당한 병졸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의 조선 침략과정에서 희생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추모”하는 국립추모시설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⁴⁾

장충단은 15칸의 단사(壇祠)건물과 3층의 기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금액으로 20,739원 정도가 들 정도로 큰 공사였고 건물과 주변 시설은 1900년 11월 10일(양력)에 완공되었다.⁵⁾ 그리고 1908년 통감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추모행사가 중지될 때까지 봄, 가을로 위령제를 지냈다. 놀랍게도 이토 히로부미가 1909년 가을에 안중근의 손에 저격당하자 국장일인 11월 4일 황족과 정부관료, 그리고 국민들을 모아놓고 통감부는 장충단에서 이토의 추모제를 행했다.⁶⁾ 이는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통치자인 일본의

3) 『고종실록』 권40, 광무 4년 5월 31일(양력), 이상배, 「고종의 장충단 설립과 역사적 의미」, 2006, 154쪽에서 재인용.

4) 이상배는 장충단의 신위(神位)에 모셔진 인물은 모두 9명으로 대개 동학군토벌(1894), 을미사변(1895), 춘생문의가(1895) 때 사망한 인사들이라고 주장한다. 이상배, 「고종의 장충단 설립과 역사적 의미」, 2006, 155·166~167쪽 등.

5) 금액은 『獎忠壇營建下記冊』 古 4206-4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완공일은 이상배, 「고종의 장충단 설립과 역사적 의미」, 2006, 157쪽 참조.

6) 장충단 제사의 금지는 『순종실록』 권2, 융희 2년 7월 23일(양력); 이토의 추모제는

애국자를 추모해야 한다는 것을 조선인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장치였다. ‘한국병합’이후 이 지역은 장충단 공원으로 변모해서 위락시설, 운동장 등의 시설이 들어섰다. 해방 후 이 지역은 서울시가 관리하면서 이준 동상, 이한응 기념비 등 헤이그 특사로, 혹은 을사조약 후 일제에 항거하다가 자결한 인물들을 추모하는 시설을 갖추었다.⁷⁾

1928년 중국전체에 통일정부가 등장하려고 하자 만주의 일본 관동군은 동북삼성의 실력자인 군벌 장쥘린(張作霖)을 폭살시킴으로 만주에서 자신들의 이권을 강화하려고 했다. 그러나 만주에서의 사태는 매우 복잡해졌다. 일제는 이토 히로부미 암살 20주년을 맞아 조선에서 그의 추모시설을 세움으로써 식민 통치의 정당화를 확보하고자 했다. 즉 일제는 이토를 추모하는 사찰을 세울 것을 계획했다. 그리하여 이토의 사망 20주년 즈음인 1929년 즈음에 당시 정무총감이었던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 1929. 6. 23~1931. 6. 19 재임)가 이토 추모사찰인 박문사를 세울 것을 기획했다.⁸⁾ 고다마는 1905년 가을, 즉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화가 되기 직전에 이토를 따라서 서울에 들어와 통감부의 서기관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이토의 측근 중의 측근이었다.⁹⁾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초대 총독이 그의 장인으로 홍미륵계도 이토, 테라우치, 고다마 모두는 큐슈(九州)의 아마구치(山口) 출신들이었다.

총독부는 이토의 추모사찰을 짓기 위해 관변단체인 ‘財團法人伊藤博文公紀念會’(이하 이토기념회)를 1930년 1월에 발족시켰다.¹⁰⁾ 이토기념회

『순종실록』 권3, 융희 3년 11월 4일(양력), 이상배, 「고종의 장충단 설립과 역사적 의미」, 2006, 160~161쪽 재인용.

7) 현 장충단공원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정재정 외, 『서울 근현대 역사기행』, 해안, 1998, 140~150쪽 참조.

8) 朝鮮總督府, 『施政三十年史』, 朝鮮印刷株式會社, 1940, 378쪽.

9) 「(社說)博文寺の落成」, 『京城日報』 1932년 10월 26일(국사편찬위원회 한국 근·현대 신문자료 신문스캔자료).

의 이사장은 조선총독부 2인자인 정무총감이 맡았다는 것은 이 기관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고다마는 일본으로 돌아가기 직전 이토를 “추복(追福)”하기 위한 시설의 건립을 위해 총독부에 장충단내 관유지 일부를 이토기념회에 “양여(讓與)”할 것을 요청하는 안건을 1931년 4월 25일에 올렸다. 흥미롭게도 총독에 의해 결정이 된 것이 바로 고다마가 정무총감으로 재임한 마지막 날로 동년 6월 19일이었다.¹¹⁾ 그러므로 양여된 관유지 내의 시설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경성운동장과 접한 부분에서 출입문을 다른 곳에 신축하는 안을 조건으로 했다.¹²⁾ 물론 사찰로서의 용도를 다했을 때에는 경성부에 다시 귀속시키는 조건도 있었다.¹³⁾

한편 1931년 9월 만주침략을 본격화하면서 이듬해 3월 1일자로 괴뢰국 만주국을 세웠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1932년 여름 이토기념회가 장충단공원에 박문사의 설립을 요청하자 총독부는 이를 승인했다.¹⁴⁾ 이때는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가 새로운 총독이 되어 정무총감인 이마이다 기요노리(今井田清徳: 1931. 6. 19~1936. 8. 5 재임)와 함께 부임해 왔다. 그러므로 박문사의 설립은 이마이다가 기념회의 이사장으로 주도했다.

설립된 사원의 칭호는 춘무산박문사(春畝山博文寺)가 되었다. 춘무는 이토의 호이고 박문사는 히로부미에서 왔다. 특히 “조선에 인연깊은 故통감 伊藤博文公爵의 명복을 追修하기 위한 사원을 창립”을 목적으로 하였고 사찰의 종파는 조동종으로 했다.¹⁵⁾ ‘한국병합’ 전후로 일본의 조동종

10) 「춘무산박문사창립원에관한건-경기(도면첨부)」, 조선총독부, 1932(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JA0004799. 이 문서는 「사원창립허가포고관리기타의건」 첩 내에 들어 있다), 202~203쪽의 이토 기념회의 취지서.

11) 「장충단공원박문사부지반환서류」, 조선총독부, 1931(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JA0019990(총13쪽), 4쪽(이하 쪽수는 13쪽 중의 쪽수를 의미).

12) 「장충단공원박문사부지반환서류」, 1931, 5~6쪽.

13) 「장충단공원박문사부지반환서류」, 1931, 4쪽.

14) 「춘무산박문사창립원에관한건-경기(도면첨부)」, 1932, 188~191쪽.

일파가 조선의 원종(圓宗) 중무원의 이회광과 더불어 통합운동을 전개한 것을 생각한다면 이 사찰의 건립으로 조선 내에서 1930년대 초에는 일본 조동종이 보다 공고히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다.¹⁶⁾ 그리고 중일전쟁(1937)이 발발하자 박문사를 중심으로 조선 내 불교교단의 통합시도가 있었다.¹⁷⁾ 주지하듯이 조선불교계는 이에 총본산(總本山)설립운동으로 맞서서 조계종이 1941년에 조계종 태고사가 창설되었다.¹⁸⁾

기념회의 취지에 나타난 주목되는 지점은 이토기념회가 이 사찰을 “君國鎮護의 一大道場”으로 삼고 싶다고 한 것으로 이 사찰건립의 목적은 분명했다.¹⁹⁾ 총독부로서도 만주침략 후 후방 조선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특히 한국침략과 직접 관련 있는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²⁰⁾ 그러므로 박문사 건립은 ‘한국병합’과 만주

15) 「춘무산박문사창립원에관한건-경기(도면첨부)」, 1932, 190·193쪽.

16) 한국병합 전후 일제와 ‘친일’조선인 승려들의 조동종 통합운동과 이에 한운운을 중심으로 한 일제종의 대결은 김광식, 「1910년대 불교계의 曹洞宗 盟約과 臨濟宗 運動」, 『한국근대불교사연구』, 민족사, 1996. 참조.

17) 일제가 박문사 창건 처음부터 총본산으로 삼을 계획을 삼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중일전쟁 발발 이후로 일제의 “내선불교연합”시도가 일반의 주의를 끈 것은 확실하다. 「조선일반상황(8월 11일 조선총독부)」정보위원회 8·12 정보 제5호: 척무성정보(연도미상) 일본국립공문서관, 내각, 각종정보자료: 北支事變關係情報綴 其(二) (관리번호 A03023893400) 아시아역사자료센터 - <http://www.jacar.go.jp>.

18) 김광식은 일제의 “심전개발”계획(1935)이 불교계 종단통합운동의 촉매제가 되어서 조계종창립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김광식, 「일제하 불교계의 총본산 건설운동과 조계종」, 『한국근대불교사연구』, 1994, 417~425쪽. 그런데 사찰령은 사찰의 건립을 규정하는 부분이 없었으므로 총본산 건설운동은 사찰령이 존재하는 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1938년부터 진행된 일제의 「종교단체법」(1939년 4월 8일 법률 제77호, 개정 1940년 3월 29일 법률 제25호) 제정논란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종교단체법은 종교계(교파신도, 불교종파, 기독교 등)에 대한 통제를 도모함과 더불어 새로운 사찰설립을 신청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다. 종교단체법은 김승태,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기독교편, 1910~1945」,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307~314쪽.

19) 「춘무산박문사창립원에관한건-경기(도면첨부)」, 1932, 203쪽.

20) 박문사외에도 1930년대 중후반 약초관음당, 동본원사, 서본원사 등이 남산과 장충

국건립을 연결 상에 놓음으로써 일본제국의 통합을 확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리고 조선 내 불교계를 통합하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 박문사 건립의 특징과 활용

이러한 중대한 의미를 가진 박문사 건립의 성격은 당시 이 사업에 참여한 인사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박문사 창립을 요청한 이토기념회에는 정부와 민간 유력인사들이 상당수 관여되었다. 기념회의 이사장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무총감인 이마이다였다. 이하 경무국장 이케다 키요시(池田 清), 경성부윤 이노우에 키요시(井上 清), 학무국장 하야시 시게키(林 茂樹), 재무국장이자 식산은행 이사인 하야시 시게조(林 繁藏) 등 총독부 측 인사와 실업계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조선인으로 윤덕영, 박영철, 이윤갑, 이항구, 한창수, 한익교, 한상룡, 권중현 등 일본의 작위를 받은 인사들이거나 유명한 실업가였다.²¹⁾ 이토기념회는 정무총감을 필두로 하는 사실상 총독부의 관변단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의 추진은 총독부의 입김이 그대로 반영된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다.

박문사는 1932년 4월 23일에 공사를 시작해서 이토의 23주기에 해당하는 동년 10월 26일자로 완공되었는데 본당만 387평이었다.²²⁾ 본당 내부는 대리석으로 치장되어 있었다. 낙성식에는 총독 우가키 가즈시게와 전 정무총감 고다마 히데오가 수상을 대리해서 참석했다.²³⁾ 천황이 은제 대향로와

단공원 인근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것이 식민지 후반 가진 의미에 대해 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1) 더 자세한 인사목록은 「춘무산박문사창립원에관한건-경기(도면첨부)」, 1932, 195~200쪽 참조.

22) 「춘무산박문사창립원에관한건-경기(도면첨부)」, 1932, 193쪽.

향화료(香華料)를, 다른 황족들이 황실문장이 들어 있는 화병을 보냈다.²⁴⁾

다른 일본의 불교사찰과 마찬가지로 박문사 건축에는 조선 궁궐의 일부가 사용되었는데 본당은 경복궁 선원전(璿源殿)이, 정문은 경희궁의 정문이었던 흥화문(興化門)이 사용되었다.²⁵⁾ 이 사찰의 창립비는 당시 돈으로 엄청난 금액인 40만 원이 들었는데 건물 건축에만 25만 원, 사무 및 제반 비용으로 5만 원, 그리고 10만 원은 재단법인인 이토기념회의 기본재산으로 보존할 것이 결정되었다.²⁶⁾

흥미로운 것은 재단법인의 이들 재산이 사실상 일본과 조선 등지의 독지가로부터 기부금을 얻어서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단순히 조선인 독자들에게서만 돈을 거두었던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일정부분 할당되었던 것 같다. 이는 사실상 총독부가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경성부 땅에 종교시설을 건립하도록 허가하면서 민간인들에게서 세금에 준하는 돈을 거두어 들였던 것이다. 이점은 식민통치의 특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당시 기독교청년회(YMCA)이사장이자 개성의 개성고등보통학교의 이사장이었던 윤치호는 그의 일기에서 총독부의 이러한 교활한 정책을 개탄했다.

어젯밤 서울에 올라온 영선(윤치호의 아들, 필자)의 말에 따르면, 충남 각 군은 의연금 명목으로 1,020원을 모아야 한다고 한다. 그 내역은 재만조선인 난민돕기 성금 500원, 이토 히로부미 추모사찰 건축비 500원, 만주에 파견된 일본군 경비 20원이라고 한다. 이런저런 구실로 조선인들은 단 한 푼도 남김없이 깎그리 빼앗길 것이다.²⁷⁾

23) 「博文寺入佛式과 首相拓相代理入京」, 『동아일보』, 1932년 10월 23일(이하의 『동아일보』자료의 이용은 모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 근·현대 신문자료).

24) 朝鮮總督府, 『施政三十年史』, 378쪽.

25) 「춘무산박문사창립원에관한건-경기(도면첨부)」, 1932, 210쪽. 선원전은 선대왕들의 영정을 모셔두고 왕이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었다.

26) 「춘무산박문사창립원에관한건-경기(도면첨부)」, 1932, 201쪽.

위에서 말하는 추모사찰은 박문사를 지칭하는 것이다. 윤치호는 이듬해인 1933년 일본 도쿄에 이토 히로부미의 동상건립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조선에도 성금이 할당되자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자조적으로 말했다.

일본인들이 20만 원을 들여 도쿄에 이토 히로부미 공작의 동상을 세울 예정이다. 조선인들은 세계 지도에서 자기 나라를 지워버린 장본인을 기리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액수의 기부금을 회사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 조선인들은 계층을 불문하고 지난봄에 완공된 이토 씨 추모사찰(박문사, 필자)을 짓는 데 3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회사해야만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쿄에 이토 씨의 동상을 세우는 데 기꺼이 성금을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²⁸⁾

윤치호의 일기와 이토기념회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박문사 건립에 든 대부분의 돈이 조선인들에게서 의연금이라는 명목으로 각출되었던 것이다.

조선인들의 엄청난 헌금에 의해 건립된 박문사는 유지들의 결혼식, 추도회, 장례, 공공집회를 위해 개방되었다.²⁹⁾ 물론 이렇게 사용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박문사 유지·보수를 위한 재정수입을 위해서였다. 총독부가 재단법인에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민간자본과 사업을 이용해서 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이후 박문사는 조선신궁과 함께 일본 고위 관료나 저명인사가 조선에 오면 다녀가는 주요 장소 중 하나가 되었다.³⁰⁾

27) 김상태 편역, 『윤치호일기, 1916~1943—한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통해 본 식민지시기』, 역사비평사, 2001, 288쪽. 1931년 12월 16일자.

28) 김상태 편역, 『윤치호일기, 1916~1943—한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통해 본 식민지시기』, 321쪽, 1933년 11월 22일자.

29) 「博文寺を篤志者に開放」, 『京城日報』, 1933년 1월 16일(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신문스크랩 자료).

30) 「濹澤氏入京」, 『조선중앙일보』, 1933년 12월 11일(국사편찬위원회 한국 근·현대 신문자료). 濹澤은 기업인 시부사와 에이이치(濹澤榮一)이다.

박문사의 중요성이 증대한 것은 중일전쟁을 치르면서였다. 이곳에서는 중일전쟁으로 사망한 군인들을 위한 위령제가 열렸다. 예를 들면 1939년 8월 10일에 경성군사후원연맹주최로 소련과의 국경지대에서 충돌로 사망한 일본 전몰장병들을 위한 위령제가 열렸고 경성부의 행사로 추도식이 진행되기도 했다.³¹⁾ 대개 이러한 행사는 시내 각 학교대표, 각 단체대표들이 참여하기도 했다.³²⁾ 즉 일본불교가 에도시대 이래 장례의식 및 위령제를 사찰의 핵심기능 중 하나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러한 행사는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아울러 박문사에서는 사망한 고위인사들의 불교식 영결식이 개최되었다. 예를 들면 1939년 9월 말에 사망한 박영효의 영결식, 그리고 박문사 건립을 주도한 이마이다 정무총감의 추도식이 1940년 5월에 박문사에서 거행되었다.³³⁾ 이들이 불교계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박문사에서 추도식이 진행되었지만 그 선전효과는 불교계를 넘어서 전체 조선사회에도 미치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아마도 박문사의 목적에 맞는 가장 큰 행사는 이토 사망 30주년을 맞아 1939년 11월 11일에 개최된 “조선합병 공로자 합동위령제”일 것이다.³⁴⁾

31) 「張鼓峯 事件記念 博文寺에서 慰靈祭 正午엔 默禱十日의 京城府行事」, 『동아일보』, 1939년 8월 5일; 「今朝 博文寺에서 張鼓峯 事件記念 嚴肅한 慰靈祭式 名譽의 戰歿將兵 追悼」, 동신문, 1939년 8월 11일; 경성부의 행사는 「護國英靈 追悼 明朝博文寺서 執行」, 동신문, 1939년 10월 5일 참조.

32) 「千餘官民의 參列로 戰歿將兵追悼 今朝 博文寺서 舉行」, 『동아일보』 1939년 10월 6일.

33) 「朴泳孝侯爵 永訣式 午後에 靈柩發輓, 東萊에 安葬 明日博文寺에서 舉行」, 『동아일보』, 1939년 9월 30일; 이마이다의 추도식은 은행회사단인 무방회(無方會), 총독 부유지, 오카야마현인회(岡山縣人會)가 주최했다. 「今井田清德 前政務總監 昨日 博文寺서 追悼會」, 동 신문, 1939년 5월 11일 참조.

34) 「日韓合併의 功勞者 慰靈祭嚴肅舉行 昨日 博文寺에서」, 『동아일보』, 1939년 11월 12일.

이 자리에서 이토, 카츠라 타로오(桂太郎), 테라우치 마사타케, 이완용, 이용구, 송병준, 김옥균 등을 추모했는데, 흑룡회와 대동일진회가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윤덕영, 이석규(이용구의 아들) 등도 참여했다. 즉 조선인들이 ‘한국병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것이 요구되었다고 하겠다.

한편 이 행사에 조금 앞선 동년 10월에 일제는 상해에서 민간사업에 종사하는 안중근의 아들 안준생(安俊生)을 조선으로 불러들여서 박문사를 방문하게 했다. 그런데 일본 총독부의 기관지는 그가 여기서 아버지의 죄과를 참회하고 ‘참배’함으로 애국행위를 할 것을 서약했다고 보도했다.³⁵⁾ 물론 이는 일본 신문이 안준생의 박문사방문을 교묘하게 왜곡한 것이었다. 이렇게 박문사는 중일전쟁 이후에는 위령제, 고위인사들의 추도식, 경성부의 ‘애국행사’ 등 전쟁관련 공회당의 역할을 담당했다.

III. 해방 직후 박문사 관련 논란과 처리

1. 해방 직후 종교계 귀속재산 처리의 원칙

미군정은 9월 8일 남한에 진주한 이후에 1945년 9월 25일자로 군정법령 제2호를 발표해서 일본인들의 재산이전을 금지하는 적산동결조치를 취했다.³⁶⁾ 이는 한반도 내의 재산을 외국으로 함부로 옮기지 못하게 한 조치

35) 「亡父の贖罪は報國の誠に」, 『경성일보』, 1939년 10월 16일(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신문스크랩).

36) 「法令第二號—財産移轉禁止」, 『美軍政法令總覽—國文版』, 韓國法制研究會, 1971, 121~122쪽.

었다. 그런데 이후 미군정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부 산업체, 기업체가 조선인들에게 매각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던 미군정은 12월에 발표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해 남한 내 일본인들의 재산을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³⁷⁾ 군정법령 제33호는 일본 정부와 기관, 국민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모든 재산이 군정 측에 귀속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일본인들이 소유한 종교법인도 당연히 미군정 측에 귀속되었다.³⁸⁾

종교법인의 재산과 관련되어서 해방 후 제기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바로 1911년 6월 3일 제령 7호(총독부령 83호)로 반포된 전문 7조의 사찰령과 동년 7월 8일 총독부령 84호로 제정한 전문 8조의 사찰령 시행지침의 존속문제였다. 특히 재산관련조항 중 사찰재산의 처분을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사찰령과 시행규칙은 미군정 당시에도 폐지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1945년 10월 9일에 반포된 군정 법령 11호를 통해 1919년 7월 18일에 제정된 신사관련법을 폐지했다.³⁹⁾ 그러므로 다른 종교 관련법의 폐지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미군정 측은 “모든 法律 또한 朝鮮舊政府가 發布하고 法律的 效力을 有한 規則, 命令

37) 「法令第三十三號－朝鮮內所在日本人財産權取得에關한件」, 『美軍政法令總覽－國文版』, 1971, 149~150쪽.

38) 법령 제33호의 핵심은 제2조의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정부, 其의 기관 또는 其국민, 회사, 단체, 조합, 其정부의 기타기관 혹은 其정부가 조직 또는 취득한 단체가 직접, 간접으로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금은, 백금, 통화, 증권, 은행감정(勘定), 채권, 유가증권 또는 본 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기타 전 종류의 재산及 其수입에 대한 소유권은 1945년 9월 25일 부로 조선군정청이 취득하고 조선군정청이 其재산전부를 소유함”이라는 부분이다. 이로써 정부와 민간의 모든 재산을 미 군정청 소속으로 옮겼다.

39) 「법령 제11호－일정법규일부개정폐기의 건」, 『美軍政法令總覽－國文版』, 1971, 131쪽. 법령 제11호는 이외에도 치안유지법(1925. 5), 예비검속법(1941. 5)등을 폐지했다.

告示其他文書로서 1945년 8월 9일 實行中인 것을 其間이미 廢止된 것을 除하고 朝鮮軍政府의 特殊命令으로 廢止할때까지 全效力으로 此를 存續"한다고 결정했다.⁴⁰⁾ 그러므로 사찰재산관련 구법령은 그대로 존속했다.⁴¹⁾

그렇지만 종교시설에 대한 관리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장기적인 처리원칙에 대해 미군정은 일정한 원칙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미군정에서 점령 정책에 대한 정책과 행정을 총괄했던 곳은 사법부 법률분과였는데 그 중에서도 법률심의국은 군정과 관련된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의견을 제공하고 법률을 심의, 승인했다.⁴²⁾ 법률심의국은 적산 종교시설에 대한 처리원칙에 있어서 국제법(이 경우 영미법)과 일본법에 따라 "재정을 원래 목적에 가장 근사치에 있는 계획"에 넘기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것이 가진 함의는 "일본 불교시설은 조선불교계에, 일본 감리교재산은 조선 감리교 교회"에 양도한다는 것이었다.⁴³⁾ 그러나 박문사처럼 공유지에 세워진 불교시설에 대해서는 그 원칙이 적용되기가 어려웠기에 논란이 발생했다. 상당수 일제의 불교계 귀속재산은 국가나 공공단체로 귀속된 경우가 많았다.⁴⁴⁾ 이는 1930년대 이후 건립된 일본 사찰 상당수가 공공지에 있었고 해방 후 정치

40) 「법령 제21호-법률제명령의 존속」, 『美軍政法令總覽-國文版』, 1971, 139쪽.

41) Opinion #282, "Title to Articles in Religious Shrines"(1946년 5월 6일)와 Opinion # 283, "Status of Japanese Laws on Religion", 『美軍政期情報資料集: 법무국·사법부의 법해석 보고서(1946.3~1948.8)』,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7, 83~85쪽.

42) 법률심의국의 권한과 역할은 고지훈, 「주한미군정의 점령행정과 법률심의국의 활동」, 『한국사론』 44집,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2000. 참조, 특히 226~230쪽.

43) Opinion #503, "Status of Abandoned Religious Shrine-Transfer of Religious Property Custodian,"(1946년 8월 2일), 『美軍政期情報資料集: 법무국·사법부의 법해석 보고서』, 154~155쪽; 해방 후 조선불교학생동맹을 결성해서 위원장에 취임했던 이외운의 기억도 그러하다. 선우도량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 『22인의 증언을 통해 본 근현대 불교사』, 선우도량 출판부, 2002, 149쪽.

44)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지만 대체적인 경향은 정확한 것 같다. 동대백년사편찬위원회, 『동국대학교 백년사 I-백년의 길·역사』, 동국대학교, 2006, 186쪽.

적 동향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개신교 측에 대해서는 미군정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일본인들의 기독교시설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시설, 특히 신도관련 시설을 한국인 개신교인들에게 넘긴 경우가 비일비재했다.⁴⁵⁾ 이는 미 군정청에 관여한 인사들 중 상당수가 선교사출신이거나 개신교인이었던 상황과도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관재처(管財處) 처장에 평양신학교 교장을 역임한 남궁 혁이 임명된 것이라든가 사원관련 적산처리위원회에 1930년대 중후반 연희전문학교의 교장을 역임했던 호레이스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가 관여한 것은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하에서는 조동종(曹洞宗)계파의 가장 대표적인 사찰이었던 박문사를 통해서 불교 측의 적산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2. 논란의 대두와 과도입법의원에서의 해결

해방 직후 박문사는 불교사찰이었지만 여전히 경성부의 땅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므로 미군이 진주하기 전에 해화전문학교 학생들은 박문사를 기숙사로 활용했고 조선불교학생동맹이 여기서 결성되기도 했다.⁴⁶⁾ 그 뒤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박문사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주변 시설을 접수했고 기숙사와 학생동맹은 인근 필동의 개심사로 옮겨갔다. 미군 측은 이

45)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서울 남산 지역의 경성신사 자리에 기독교박물관이 들어서고 천리교(교파신도의 일종) 경성제일교회 부지를 영락교회 측에 불하해준 것은 위의 법률의견(Opinion # 503)을 개신교 측에 유리하게 해석했다는 점은 확실하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안종철, 「미군정 참여 미국선교사·관련 인사들의 활동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한국기독교와 역사』 30, 2009년 3월, 13~17쪽 참조.

46) 동대백년사편찬위원회, 『동국대학교 백년사 I』, 2006, 203쪽; 선우도량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 『22인의 증언을 통해 본 근현대 불교사』, 173~174쪽.

공간을 군인막사나 장교클럽과 같은 것을 지으려고 했다.

해방 직후 민족주의의 열기가 높아진 속에서 한국인들 사이에는 이토를 저격한 안중근의사의 동상을 건립하고 장충단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들은 안중근의 37주기인 1946년 3월 26일을 맞이해서 여러 사회단체들이 추모기념회와 함께 '의사안중근동상건립기성회'를 조직해서 활동하기 시작했다.⁴⁷⁾ 동상건립기성회는 이토의 동상을 그대로 녹여서 그것으로 안중근의 동상을 세우려고 했는데 기금은 당시 돈으로 200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 큰 액수였다. 동상건립기성회의 회장은 안중근의 동지였던 우덕순(禹德淳)이었고 여기에 이종태(李鍾泰) 등이 함께 했다.⁴⁸⁾ 또 선열기념비기성회회장 이종태가 장충단공원일대를 국립기념공원으로 해서 충렬사라든가 기념비 등을 건립하는 안을 1947년 2월 말 미 군정청에 제출하기도 했다.⁴⁹⁾ 당시 건립기성회의 민족정기 함양이라는 명분은 한국인들에게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었다.

한편 당시는 해외와 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들어와서 사회 문제가 되었는데 서울시는 1946년 3월말 장충단 일대에 이들 전제민 구호를 위해 본부를 세워서 하루에 2천 명 정도를 거주할 수 있게 했다.⁵⁰⁾ 1946년 중반 해화전문학교는 박물관을 다시 학교부지로 편입시키려고 했지만 미군 측이 이를 허가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군정

47) 「安重根義士銅像建立 獎忠壇再建期成」, 『동아일보』, 1946년 1월 8일.

48) 「안중근 37주기 추모준비회와 동상건립기성회 결성」, 『서울신문』, 1946년 3월 6일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dh_002_1946_03_06_0030).

49) 선열기념비 기성회는 안중근동상건립 기성회와 회원이 비슷한 조직이었던 것 같다. 별도의 검토가 요구되는 문제이다.

50) 「市에서 하루 二千名收容 獎忠壇 안에 戰災民救濟 本部開設」, 『동아일보』, 1946년 3월 29일. 전제민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열악한 환경으로 하루에 7, 8명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전제민수용문제가 논란이 되었지만 1949년 4월까지 존속했다. 「獎忠壇收容所 四月初閉鎖」, 『동아일보』, 1949년 3월 17일.

법무국(1946년 3월 이후 사법부로 개칭)은 일정한 유권해석을 내려야 했다.

법무국 내의 법률심의국(Opinions Bureau)은 박문사가 일본사찰이며 해방 후인 현재 일본인 신도가 없어졌지만 여전히 종교시설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당연히 헤이그협약(1907) 56조에 따라서 점령당국에 의한 “종교 시설에 대한 파괴나 의도적인 손해”는 금지된다고 보았다.⁵¹⁾ 이는 현지 정부가 설립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만 심의국은 이 시설을 종교시설로 점령기간에 잘 보존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므로 당시 안중근기념사업회 측이 박문사를 접수해서 대한제국시기의 장충단과 같은 국립추모시설을 기획한 것도 거부되었다.⁵²⁾ 그러므로 해화전문학교가 이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되지만 불교계 전체목소리를 담았는지 여부를 관재처장이 조선불교교단과 접촉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⁵³⁾

당시 불교계 내부적으로는 조계종 총무원 측과 혁신세력이 갈등 중이었으므로 총무원 측이 체계적으로 일본 불교사찰을 접수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사찰들이 이를 주도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총무원 산하의 해화전문재단의 필동부지 사용에 대해서 불교계 내에서 반대는 없었던 것 같다. 이는 불교계 측이 합법적으로 박문사 일대를 사용할 수 있게 됨을 의미했다. 해화전문학교는 1946년 가을에 이 지역 즉 필동 3가 26번지로 옮겨오면서 학교명이 동국대학으로 승격되었다. 이 지역은 조계종 서본산 별원

51) Opinion #503, “Status of Abandoned Religious Shrine-Transfer of Religious Property Custodian,”(1946년 8월 2일), 『美軍政期情報資料集: 법무국·사법부의 법해석 보고서』,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7, 154쪽.

52) Opinion #503, “Status of Abandoned Religious Shrine-Transfer of Religious Property Custodian,”(1946년 8월 2일), 『美軍政期情報資料集: 법무국·사법부의 법해석 보고서』, 1997, 155쪽.

53) Opinion #503, “Status of Abandoned Religious Shrine-Transfer of Religious Property Custodian,”(1946년 8월 2일), 『美軍政期情報資料集: 법무국·사법부의 법해석 보고서』, 1997, 155쪽.

조계사가 소유했지만 인근에는 동본원사, 묘법사도 있었다.⁵⁴⁾ 해화전문학교는 대부분의 이 시설들을 인계받았다. 그리고 1946년 5월 20일 조선불교중앙교무회의는 토지 200만평 증자를 결의, 이를 1947년 11월에 다시 확인하면서 사찰립 20%(약 1만 6,311정보)를 '동국학원'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의했다.⁵⁵⁾ 그러므로 박문사지역도 당연히 동국대학에 포함되어서 학교경영은 순조롭게 출발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박문사는 동국대학의 기숙사로 활용되었다.

1946년 중반이후부터 미군정 내 사무를 한국인들에게 인계하는 안이 제기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1946년 12월 11월에 개원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비록 자문기관에 불과했고 미군정 장관이 최종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관이었지만 최초로 조선인대표들이 한국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이었다. 더 나아가 미군정은 1947년 5월 17일 군정청 법령 제141호로 미군정청 조선인 기관을 '남조선과도정부'로 명명하고 미국인들은 각 부서의 자문이 되었다.⁵⁶⁾ 그러므로 과도입법의원에서 장충단공원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당연했다.

해방 후 장충단 공원 내 박문사처리를 어렵게 만든 것은 이 사찰이 단순히 종교시설이 아니라 장충단공원이라는 관유지 내에 있는 것이 문제였다. 미 군정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정청의 언더우드박사, 군정청 참모 벨(Bell) 대좌(대령), 과도입법의원의 김법린으로 일본사원처리문제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검토하게 했다. 군정청 장관 아처 러치(Archer

54) 동대백년사편찬위원회, 『동국대학교 백년사 I』, 2006, 193~194·203쪽. 이 지역의 토지도 다른 일본 사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성부 소속이었을 개연성이 높다. 오늘날의 정각원은 경회궁의 숭정전을 조계사 주지가 1926년에 불하받아서 지은 것이다. 동대백년사편찬위원회, 『동국대학교 백년사 I』, 2006, 204쪽.

55) 동대백년사편찬위원회, 『동국대학교 백년사 I』, 2006, 198쪽.

56) 「法令第一四一二號—南朝鮮過渡政府의名稱」, 『美軍政法令總覽—國文版』, 1971, 387쪽.

Lerch)는 국립기념공원의 문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해서 과도입법의원이 이 문제를 토론하도록 안건을 이곳에 회부했다.⁵⁷⁾

상당히 복잡한 논의가 오갔지만 과도입법의원에서 김법린이 입법의원들에게 설명한 국립기념공원 안건의 취지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그의 논지는 장충단공원의 문제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그의 발언의 일단이다.

獎忠壇一帶는 勿論 韓國時代로부터 이것이 公園地帶입니다. 그런데 시방으로부터 約十二年前에 總督府時代に 清井(정무총감 이마이다 필자)이가 와서 自己의 丈人の 伊藤을 記念하기 위해서 佛教말로 菩薩을 진 것입니다. 그 래가지고 獎忠壇一帶를 官地로 編入했는데 高窠이 約三萬坪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敵産으로 問題가 되었습니다.⁵⁸⁾

즉 김법린은 공원지대에 건축된 박문사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이것이 해방 후 불교계 재산으로 취급되어 적산으로 편입된 사실을 언급했다. 그리고 자신이 불교 측을 대표해서 벨과 언더우드와 함께 일본사원 처리문제의 위원으로 임명되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피력했다.

이것이 勿論 現在의 形態로 본다면 寺院이지만 그러나 본래 이 寺院에 편입된 基地로 말하면 獎忠壇의 土地인만큼 當然히 앞으로 우리의 國家가 선다면 이것은 國有地로 編入되어야 한다. 또 由緒깊은 이 獎忠壇인만큼 忠烈을 追慕하자는 道場으로 만들 必要가 있다 그런 程度로 오늘날 日本寺院 管理에

57) 「獎忠壇財産管理案 立法議院에 委任」, 『동아일보』, 1947년 2월 28일.

58) 「남조선과도입법의원속기록 제49호」(1947년 4월 4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속기록』 2권, 대한민국국회, 1999, 660~661쪽.

對해서 그것의 施策이라든지 管理한다는 것은 結果問題로 하고라도 當然히 이것은 先烈를 追慕하는 道場으로 만드는 것이면 좋겠다 그래서 本議員으로도 同意를 했습니다.⁵⁹⁾

김법린은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불교계의 재산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한말시대의 역사에 대한 이해에 따라 이 부지가 관유지에 소속된 공원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김법린이 해방 후 조선불교 총무원장, 동국대 이사장으로 동국대학교 설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그의 발언은 매우 인상적인 것이었다.

과도입법의원에서 결국 국립기념공원이라는 명칭을 둘러싸고 약간의 논란이 되었지만 결국 박문사일대의 용도는 나중에 정하기로 하고 일단 공원시설, 즉 관유지로 귀속하는 것이 결정되었다.⁶⁰⁾ 그 결과 미 군정청도 이 안을 그대로 따라서 장충단지역은 적산에서 분리되어 서울시로 편입되었다. 미군정도 초기의 인식이었던 박문사가 종교시설이라는 시각에서 탈피해서 이 시설이 공용지에 설립되었다는 김법린의 논리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찰령이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지역의 일본 불교사찰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한 것이 많았던 것 같다. 그리고 불교계 재산의 최종처분권이 일제의 사찰령에 따라 정부에 있는 한, 불교 측은 교육과 기타사업을 진행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므로 불교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법린을 필두로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사찰령폐지 및 사찰 재산임시보호법”이 과도입법의원에서 통과되기도 했다.⁶¹⁾ 그러나 미군정

59) 『남조선과도입법의원속기록』 2권, 1999, 661쪽.

60) 『남조선과도입법의원속기록』 2권, 1999, 666쪽.

61) 「남조선과도입법의원속기록 제129호」(1947년 8월 7일)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속기록 제130호」(1947년 8월 8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속기록』 3권, 대한민국국회, 1999,

측은 이 문제를 새로운 국가가 수립된 후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문제는 1963년까지 계속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었다.

IV. 결론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을 도발하면서 대륙침략을 감행했다. 그리하여 후방인 조선의 안전과 질서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당시 일제는 만주침략이 중일전쟁으로 확대되자 일본의 국가 신도를 활용하면서도 불교계를 통해 군인들의 위령제를 열었다. 불교사찰의 신축을 위해 일제는 남산과 인접한 장충단 근처에 각종 일본 종파의 사원건립을 허용했는데 박문사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에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는 시설은 안성맞춤이었으므로 조선인들의 의연금으로 1932년 장충단 공원 일대에 조동종 교파의 박문사가 건립되었다. 장충단 공원은 경성부의 부지였으므로 이토기념회가 총독부를 통해 박문사 부지를 양도받았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봤듯이 박문사는 저명인사들의 추도식, 이토관련 인사들의 위령제, 전물군인들의 추도식 등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즉 종교시설과 국가의 시설과의 경계선은 모호했다.

해방 후 초기 박문사는 불교계의 해화전문학교의 기숙사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미군 측은 너무나 훌륭한 시설을 가진 이 사찰 일대를 미군의 숙소와 장교클럽으로 삼고 싶어 했다. 그러나 미 군정청 사법부의 유권해석으로 박문사가 종교시설로 간주되면서 일단은 해화전문학교(이후 동국대학)

측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해 다시 국가의 추모시설을 설치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 과도입법의원은 이 문제를 논의되었다. 김법린 등의 주도적 역할로 박문사를 포함한 장충단 공원 일대는 적산으로부터 제외되어 관유지로 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박문사는 다시 철폐되고 이 지역이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공원으로 바뀌었던 것 같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에 박문사 자리에 외국 손님을 맞는 영빈관을 짓는 안이 검토되었고 오늘날의 신라호텔 영빈관이 1967년 2월 28일 완공되었다. 수년 후 정부는 영빈관과 인근 국유림 2만 7천여 평을 민간에 불하하기로 했고 이를 삼성 측이 매입해서 오늘날 신라호텔이 이곳을 소유하게 되었다.⁶²⁾ 이에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집권세력의 현실정치 논리가 개입되었던 것 같다. 외국의 귀빈을 위한 숙소가 장충단 공원의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공원은 더 축소되게 되었고 대규모 추모시설은 짓지 않기로 결정이 내려진 것 같다. 그리고 1983년 장충단공원은 서울시에서 정부로 관리권이 넘어갔다. 구한말, 일제, 해방 직후의 장충단공원과 그 내부의 박문사의 운명은 시대의 영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역사의 현장이었다.

62) 최근의 박문사부지에 대한 역사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현대사연표의 다음 기사들을 참조. 「서울筆洞에 迎賓館 개관」(1967년 2월 28일: 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tc_ct_1967_02_28_0070); 「政府, 迎賓館과 인근 國有林 등 2만 7천여 평 불하키로」(1973년 6월 26일: 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tc_ct_1973_06_26_0100); 「三星그룹, 迎賓館을 28억 4,420만 원으로 인수」(1973년 7월 6일: 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tc_ct_1973_07_06_0130).

□ 주제어(Keyword)

장충단공원(獎忠壇公園, Changchoongdan Park), 박문사(博文寺, Pakmun Temple),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Ito Hirobumi), 귀속재산(歸屬財産, Vested property), 김법린(金法麟, Kim Bup-rin), 호레이스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

(2009.5.23 투고 / 2009.6.4 심사완료 / 2009.6.13 게재완료)

[국문초록]

식민지 후기 박문사(博文寺)의 건립, 활용과 해방 후 처리

안 종 철

이 논문은 대표적인 국가추모시설로 대한제국시기에 건설된 장충단 지역에 건립된 박문사의 건립과 활용, 해방 후의 처리를 다룬다. 박문사는 일제가 ‘만주사변’ 전후로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여 1932년 가을에 건립한 조동종계 불교사찰이었다. 당시 총독부 정무총감이 이사장으로 있던 ‘재단법인 이등박문공기념회’가 사업을 주도했는데 이는 총독부가 사실상 이 사업을 관장했음을 보여준다. 기념회가 박문사 설립기금을 각 행정기관을 통해 조선인들에게 사실상 강제했음은 이를 잘 보여준다. 총독부는 불안한 정세에서 이토추모를 통해 조선 내 치안에 도움을 얻고자 했다. 박문사 건립기념회에는 정무총감을 필두로 정부 각 국장들, 사업가들, 조선인 유지들이 참여했다. 박문사는 특히 중일전쟁(1937) 발발 이후 일본 전몰장병 위령제, 불교계 인사들의 추도식, 특히 조선합병 공로자 위령제 등의 개최에 활용되었다.

해방 직후에 미군정은 종교시설에 대한 일반 국제법적인 원칙에 따라 일본 불교시설을 조선불교계에게 이관해야 한다고 해석해 두고 있었다. 이는 박문사에도 적용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문사는 공공시설 위에 건축되었으므로 조선인들은 상이한 접근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혼란이 있었다. 그러므로 미군정이 지원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긴 토론 끝에 김법린이 발언한 바, 즉 공공시설에 설립된 박문사는

새로운 국가 출범에 즈음해서 다시 관유지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안이 채택되었다. 김법린은 당시 호레이스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 등과 함께 미군정이 임명한 일본사원처리문제 위원회의 위원이었다. 박문사의 활용과 처리는 일제 말기 건립된 일본계 불교사찰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Abstract]

The Erection, Utilization of the Pakmun Temple during the Late Colonial Period and Its Disposal After Korean Liberation from Japan

An, Jong Chol

This article deals with Pakmun Temple which was commemorated and constructed for Ito Hirobumi around Japanese Manchu Invasion: how it was constructed, managed, and disposed of later. The site was the National Memorial Park during the Taehan Empire(1897~1910). This temple was built by the Association of Ito Hirobumi Memorial in 1932, the organization that had the vice Governor-General as head of Board of Trustees. This shows the Colonial Government in reality initiated this project. The funding for the establishment was de facto forced upon Koreans through the colonial administrative units. It also reflects Governor General's willingness to pacify the possible unrest in Korean peninsula through commemorating a Japanese patriot. At the opening date, with the Vice-Governor General, the directors of several government Departments, businessmen, and the Korean worthies participated into the ceremony. Since the outbreak of the Second Sino-Japanese War(1937) the Pakmun Temple was utilized for a joint service for the war dead, memorial services for the Buddhists and merit persons in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1910).

After Japanese Empire crumbled in 1945, the US Arm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interpreted based upon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that Japanese Buddhist temples would be transferred to Korean Buddhists, the interpretation also applicable to Pakmun Temple. Since the Temple, however, was built on the government Memorial site, different groups had their own ideas regarding the possible use of the site. Therefore, this issue was discussed at the South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SKILA). In the long discussion, at last, it was decided that the Pakmun Temple had to be reverted to government land given that the site belonged to National Memorial site. This is very well summarized in the Kim Bup-rin's statement. Kim, with Horace H. Underwood was a member of the Committee for the Japanese Religious Properties. Pakmun Temple case shows very well the destiny of the Japanese temples in Korea, which were built during the wartime period.